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예외사유(안 제5조제4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관세탈루 등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